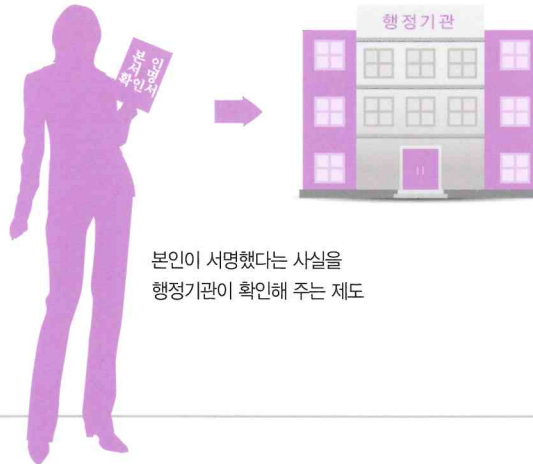


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?

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, 「민원인이 직접 시·군·구청 민원실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,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」입니다.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른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 (2012. 12. 1. 부터 시행)

부동산登記, 금융기관 담보대출,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



발급 방법

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

① 민원인이 직접 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 방문
⇒ 대리발급 불가



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
⇒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



③ 확인서 발급(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)
⇒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



④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

(전자)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

구 분	최종 제출 기관
법원, 행정기관인 시·군·구청, 차량등록소에 인·허가 시 제출	
2015. 1. 1. 부터	중앙행정기관, 시·군·구청으로 확대
2016. 1. 1. 부터	공공기관, 지방공사(단) 또는 각급학교
2017. 1. 1. 부터	국회, 법원(등기소), 선거관리위원회 등(예정)

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

유학생, 해외 여행자,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나 인감증명서 활용

